

교원업적평가규정(3-6-5)

최종개정일 : 2019.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6조의 2와 관련하여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 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 업적평가 관리(이하 “업적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및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5.8.27)

② 이 규정에서 업적이라 함은 교원의 교육, 연구(창작포함), 봉사, 산학협력 등 정관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한 영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2011.9.22)

제4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교원업적평가 대상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비정년트랙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01.28.)

1.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원
2. 「외국인교원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3. 처장급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는 교원(단, 제1학기 시작일 이전 보직을 면한 경우 제외)
4. 정년퇴직 예정 교원 (단, 정년퇴직이 제2학기 최종일인 경우에 한함)
5. 기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제외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의과대학 및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별도로 정하며, 신설 단과대학 또는 신설 학부(과)의 교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5.10., 2015.8.27.)

③ 교원업적평가 기간은 1개 연도(1월1일 부터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이루어진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해외연수, 현장학기 등이 예정된 교원이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업적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1.9.22.)

③ 평가유형은 매년 초에 평가유형 선택을 안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원업적평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직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2012.5.10)

제2장 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원칙)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및 근무성적(가감평가)으로 하되,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2011.9.22.)

제6조(평가기준) ① 교원업적평가는 교육형, 연구형, 봉사형, 산학협력형으로 구분한다.

1. 교육형 : 교육 60, 연구 20, 봉사 10, 산학협력 10
2. 연구형 : 교육 40, 연구 40, 봉사 10, 산학협력 10
3. 봉사형 : 교육 40, 연구 20, 봉사 30, 산학협력 10
4. 산학협력형 : 교육 30, 연구 10, 봉사 10, 산학협력 50(신설2011.9.22)

(개정2012.5.10) (개정2013.2.28)

② 교육형의 평가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사항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위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제1과 같다.(개정2012.5.10)

③ 연구형의 평가는 논문, 저서 등 지식의 창조와 관련된 활동 위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제2와 같다.(개정2012.5.10)

④ 봉사형의 평가는 대학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위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제3과 같다. 단, 학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 수행한 교원만 선택이 가능하다.(개정2012.5.10., 2015.8.27.)

⑤ 산학협력형의 평가는 산학협력 전반에 대한 활동 위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제4와 같다. (개정2011.9.22)

⑥ 근무성적평가는 각 유형별로 공통으로 적용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제5와 같다. (개정2012.5.10)

⑦ 1년 이상의 장기 국내·외 연수교원, 파견, 휴직, 현장학기제의 교원업적평가는 연구영역 또는 산학협력영역에 한하여 연수기간을 포함한 2년간 연구실적의 평균점수로 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기구

제7조(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 ① 교원업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과장 책임 하에 학과별로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이하 “업적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과별 업적평가소위원회는 해당학과 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 교원이 3인 이내인 경우 학문 계열별로 통합 업적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업적평가소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는 단과대학 소속의 경우 단과대학교원 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유일학과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신설 2011.9.22.)

제7조2(단과대학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소위원회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단과대학별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신설2011.9.22.)

② 단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4인에서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 및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르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단과대학별로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2011.9.2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신설2011.9.22.)

④ 단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기일내에 제출한다.(신설2011.9.22.)

제8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원업적평가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업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 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업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업적평가위원회 회의) ① 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업적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서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업적 기재사항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업적 우수교원의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 업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평가절차

제11조(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평가대상 교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업적보고서 및 업적평가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업적평가소위원회 또는 통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적평가소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업적보고서 및 업적평가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알리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유일학과는 교원업적평가 업무 부서에 제출하고 단과대학은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9.22.)

③ 단과대학업적평가위원회는 소속대학 교원의 업적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교원업적평가 위원회에 인계한다.(신설2011.9.22.)

④ 업적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의심의, 재평가 등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심의 후 최종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업적평가결과는 당해 교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 ① 근무성적평가는 교원의 근무수행태도에 대하여 평가하되 별표 제4호의 근무성적평정기준표에 의거 가감점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업무부서가 주관하되 대학의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3조(업적관리 결과의 활용) ① 총장은 매년 1년간의 업적을 기준으로 하여 총장이 정한 인원수 범위 내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교원을 선정, 우대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업적점수에 미달된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 재임용 등의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타 업적관리 평가결과는 총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 총장이 인정하는 보직 활동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활동 등으로 대학발전에 기여도가 클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삭제(2015.8.27.)

부 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8년도(1.1~12.31)의 교원업적평가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1년도(1.1~12.31)의 교원업적평가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원업적평가서(교육형)

_____ 학(부)과 직명 : _____ 성명 : _____

I 교육 (60)				II 연구 (20)				
평가 지표		실적	점수	평가 지표		실적	점수	
1-1	강의평가	수강생평가		II-1	논문	()%		
1-2	강의공개	()건		II-2	저서	()%		
1-3	보충지도	()건		II-3	전시 및 발표	()%		
1-4	티칭포트폴리오	()건		II-4	창작	()%		
1-5	수업개선 노력	세미나	()건	II-5	공연 및 의상	()%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	()건					
1-6	중간고사 피드백	()건		II-6	학술활동	()%		
1-7	수시시험 피드백	()건		II-7	연구비 수탁	()만원		
1-8	동기유발학기	()건		II-8	수상공훈	()%		
1-9	강의기법 개발 및 실시(코디,단순)	()건						
1-10	교재개발(최종,수정)	()건						
1-11	학생지도	학생상담	(상담/전체)					
		학생정원관리	()%					
교육영역 계				연구영역 계				
III 봉사 (10)				IV 산학협력 (10)				
평가 지표		실적	점수	평가 지표		실적	점수	
교내 봉사 (5)	III-1	행정보직 활동	()%	IV-1	취업지도	취업실적(취업률)(5)	()%	
		위원회 활동	()%			취업연계	()건	
	III-2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IV-2	교수현장학기제 (산업체 파견활동)		()주	
	III-3	입시관련 홍보활동	()건					
	III-4	비정규수업 참여	()시간	IV-3	학생실 습	캡스톤디자인 및 수상	()건	
	III-5	대학 정책사업 참여	()건			현장실습지도	()건	
기타 교내봉사		()%	실습협약체결			()건		
III-6	교내·외 수상실적	()%	실습파견			()건		
교외 봉사 (5)	III-7			IV-4	창업동아리지도	()건		
	III-8	학회활동	()%	IV-5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건		
	III-9	위원회활동	()%	IV-6	기술, 경영지도	()건		
	III-10	초청강연	()건	IV-7	장학금 유치	()만원		
	III-11	심판	()건	IV-8	산업체 교류	방문특강	()건	
	III-12	각종 평가활동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	()건	
	III-13	기부금 유치	()만원		IV-9	특허	국제특허	()건
			()만원				국내특허	()건
III-14	기타	()건		IV-10	연구비 수주	()만원		
봉사영역 계				산학협력영역 계				
총계(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점		

교육형 지침서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교육형	60	20	10	10

1. 교육영역(60점) (개정 2016.2.4., 2019.01.28.)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교육형 (60)	평가(20)	수업평가	20	
	강의 (33)	AL 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강의공개		4
		보충지도		5
		티칭포트폴리오		5
		수업개선노력	세미나	3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	4
		중간고사 피드백		4
		수시시험 피드백		6
		동기유발학기		3
		강의기법 개발 및 실시		3
		교재개발		4
		학생 지도 (7)	학생상담	
	학생정원관리		5	

【 교 육 】

수업평가(20점)

- 1학기, 2학기 평균점수를 20점으로 환산

AL(Active Learning) 교과목 수업운영

구 분	점 수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 공개수업(2점) : 교과목당 1점 (최대 2개 교과목 인정)

- 수업참관(1점) : 회당 0.5점 (최대 2회 인정)

강의공개(4점)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공개강의 인정
- ACE사업 기간 동안에는 시행실적 소급적용
 - ※ '10, '11학년도 시행실적은 '12년도 업적평가에 반영
- ACE사업 종료 이후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이 아니라 개인이 지원하고 선발된 경우 인정한다.
- 강의공개는 1건(10주차 이상)당 2점으로 함. 단,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 1주당 0.2점

보충 지도(5점)

-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재시험 실시 후 근거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과목당 1점, 교무처에서 근거자료 제출(출석부 등)

티칭포트폴리오(5점)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된 포트폴리오(예: e-portfolio) 제출시 건당 1점 반영

수업개선 노력: 세미나(3점),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4점)

-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며, 건당 0.5점 인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가(교수법 특강, 강의중간 자가평가 등)
- 기타 교육 관련 세미나 참여 및 교육도구 개발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 : 세미나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교육도구 개발의 경우, 근거자료 제출시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

중간고사 피드백(4점)

-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한 경우 과목 당 0.5점
- 근거서류 : 인트라넷 성적입력여부, 모범답안

수시시험 피드백(실기시험 포함)(6점)

- 정규시험 외의 시험 평가 후 근거서류 제출 시 건당 0.5점
- 출석부에 표기, 시험원안지 등 제출
- 중간 및 기말고사 외의 시험 전부 인정

동기유발학기(3점)

- 동기유발학기를 주관할 경우 3점
- 공동주관일 경우 3/n(명)으로 한다.

강의기법 개발 및 실시(3점)

- 사이버 강좌 및 개발, PBL, 분담 및 외국어 강의 건당 1점
- 분담강의의 경우 단순 분담 강의는 제외, 융복합교과목의 분담강의만 인정하며, 코디교수는 1점, 단순참여자의 경우 0.5점 인정함

교재개발(4점)

- 교재 개발 후 수업에 적용 시 건당 1점
- 목록 등을 갖추고 제본하여 학기 초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수업에 활용된 교재만 인정

항 목	점 수
최초개발	1점
수정본	0.5점

학생상담(2점)

- 상담실적은 학기단위로 평가하며 한 학기당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도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교수(예 : 교양학부 교수)는 지도 학생 외(다른 교수의 지도 학생, 또는 타 학과 학생)의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근거에 따라 지도학생 1회 상담별 0.1점을 부가한다.

$$\text{취득 점수} = \frac{\text{상담한 학생수}}{\text{평생 family제 지도학생 수}(n)} \times 1(\text{학기})$$

학생정원관리<학과단위 평가>(5점)

- 학생정원은 10월 1일을 기준일로 평가한다.
- 각 학(부)과의 배점은 각 전공의 재적생 비율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편제정원 대비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교양학부 등 재학생이 없는 학과(폐과 제외)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학생정원관리 미반영 자신 교육총점)

2. 연구영역(20점) ※ 1%당 0.1점

구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구분	배점	구분	배점		
논문	Science, Nature, Cell	500%	Science, Nature, Cell	500%		
	SCI, SSCI, SCIE, A&HCL	300%	SCI, SSCI, SCIE, A&HCL	300%		
	국외전문학술지, SCOPUS	250%	Index medicus , SCOPUS	250%		
	국외일반학술지	150%	국외일반학술지	150%		
	학진등재지	200%	학진등재지	200%		
	학진등재후보지	150%	학진등재후보지	150%		
	일반학술지	100%	일반학술지	100%		
	기타학술논문	50%	기타학술논문	50%		
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250%	국외전문학술저서	250%		
	국내전문학술저서	200%	국내전문학술저서	200%		
	번역	전문번역	200%	번역	전문번역	200%
		일반번역	100%		일반번역	100%
	기타 저서	100%	기타 저서	100%		
전시 및 발표	전국 전시개인전	200%	전국 전시개인전	200%		
	일반 개인전	150%	일반 개인전	150%		
	국제 초대작가전	160%	국제 초대작가전	16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내)	50%	공인 단체(국내)	50%		
창작	장편소설, 희곡, 시나리오	100%				
	중단편, 시, 수필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	80%				
공연 및 의상	연출, 희곡, 시나리오	100%				
	감독, 무대의상	80%			감독,무대디자인	80%
학술 활동	국제학회 발표	50%	국제학회 발표	50%		
	국내학회 발표	30%	국내학회 발표	30%		
연구비 수탁	인문사회 25만원당 1% (산업체 연구비 제외)		자연계 50만원당 1% (산업체 연구비 제외)			
수상 공훈	국제학술상	100%	국제학술상	100%		
	국내학술상	50%	국내학술상	50%		
	교내학술상	30%	교내학술상	30%		

【 연구 】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란 SCI, A&HCI, SSCI, SCIE 등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전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해당 국가 학술지 목록에 근거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일반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술지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은 논문을 게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 학술논문이란 일반학술지 이외의 학술지, 교내논문집 등을 말하며, 인정범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하여 공동연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단독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를 말한다.

저서

- 국내·외 전문학술저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전문번역은 전공관련 학술번역, 일반번역은 교양서 등 기타분야 번역을 말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타저서는 편저, 교재, 교양학술서 등을 말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개정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저서 인정 비율은 $1/n$ 로 하며 n 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 한다.

전시 및 발표

-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및 이에 준하는 미술관을 말한다.
- 일반 공인된 전시관은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을 제외한 미술관으로 지자체 운영 미술관 및 전시관 또는 이에 준하는 미술관 및 전시관을 말한다.
- 개인전과 초대작가전으로 2회까지만 인정한다.
- 국제전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 공인된 단체전(국제, 국내), 공인된 초대작가전(국제 및 국내), 공인된 공모전은 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 (등재 후보 학회 포함), 5회 이상에 작품 전시회 실적이 있는 협회나 학회를 말한다.
- 전시 및 발표 증빙자료로 팜플릿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 및 발표는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중복되는 작품전시 및 발표는 1회만 인정한다.

창작

-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으로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장막희곡, 장편시나리오, 중단편소설, 시, 단막희곡, 평론, 수필, 단편시나리오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잡지로 선정된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만 인정한다.
- 장막희곡과 장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중단편소설,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25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장편시나리오, 단편시나리오, 장막희곡, 단막희곡은 공연 및 영상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시는 2편까지 인정한다.
- 인정 비율은 $1/n$ 로 한다.

공연 및 영상

-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공연장에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또는 민족예술단체연합회 산하 공공협회에 가입된 단체에서 공연한 작품만 인정한다.
- 영상은 국내외에서 상영된 영상물만 인정하며, 시나리오, 희곡은 창작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술활동

- 학술회의발표와 연구비 수탁은 총 100%까지만 인정한다.
- 학술회의 발표 및 강연은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국제학회란 국제적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로 3개국 이상의 외국인 논문발표자가 참가한 경우를 말한다.
- 국내학회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 주최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전문 학술회의를 말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연구참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1/10$)

연구비 수탁

- 교내학술연구비, 해외파견,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는 제외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수상 및 공훈

- 국제학술상, 국내학술상, 교내학술상을 인정하며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3. 봉사영역(10점) ※ 1%당 0.1점 <개정 2016.2.4., 2019.01.28.>

구분	세부구분	배점기준
교내 봉사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행정보직 책임시수 - 7H이하 : 200% - 8H이하 : 100% · 기타 행정보직 : 50% 상위 1개 인정 · 위원회 위원 : 20% 상위 최대 3개 인정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최고 30%)	· 중앙방송 출연 : 30% · 중앙지 보도 및 컬럼게재 : 20% · 지방지 보도 및 컬럼게재 : 10% · 기타 보도 및 컬럼게재 : 5% · 지방방송 출연 : 20%
	입시관련홍보활동 (최고 50%)	· 고교 방문 및 입시홍보활동 건당 5%
	비정규수업 참여 (최고 60%)	· 15시간당 30%
	대학 정책사업 참여 (최고 60%)	· 학교의 주요정책사업 - 1건당 참여자(30%), 참가자(10%) (예: RIS, 학교기업 활동 등)
	기타 교내봉사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노력봉사 건당 5%
교외 봉사	수상실적 (최고 50%)	· 총장 표창 : 30% · 국제학술(단체)상 및 중앙정부기관 이상 : 50% · 지방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30% · 국내학술 및 민간단체상 수상 : 10%
	학회활동	· 국내 전국학회 회장: 50% · 부회장, 편집위원장 : 30% (등재 및 후보학회, 구체적 역할이 주어진 경우)
	위원회 활동	·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 20% · 각종 민간단체 및 산업체 위원 : 10%
	초청강연	· 외부강연 건당 5%
	심판	· 공인경기 심판 : 30%
	각종 평가활동	· 국가고시 출제 : 건당 30% · 국가고시 채점 : 건당 10% · 연구과제 및 학술지 논문심사 : 건당 10%
	기부금 유치	· 자선단체 등 20만원 당 1%
	기타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 건당 5%

【 봉 사 】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 대학평의원 및 교무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본다.
- 행정보직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본 대학교 규정집에 있는 위원회 또는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T/F팀 포함)를 말하며, 평가는 참석횟수(15회 이상 참석시 만점)로 한다.
- 행정보직 수행기간 및 위원회 활동은 위촉받은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산출한다.
(예) 위촉기간 (2010. 3 - 2011. 2) : 2010년 실적
위촉기간 (2010. 8 - 2012. 7) : 2011년, 2012년 적용
- 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은 100%인정, 6개월 미만은 50%를 인정한다.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됨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내용을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 언론 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홍보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입시관련 홍보 활동

- 입시관련 홍보활동은 입학관리팀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비정규수업 참여

-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하여 주 15시간 당 30%,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 평생교육대학, 경영행정대학원 등의 특별교육 과정은 이에 해당한다.

대학 정책 사업 참여

- 대학 정책 사업 참여는 사업획득후 수행하는 경우로 교수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인정범위는 1건당 책임자(30%), 참가자(10%)로 한다,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개인 선택

기타 교내봉사

- 각종 노력봉사 1건당 5%로 하며,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내외 수상실적

-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연구관련 수상은 연구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학회활동

- 학회활동은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을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학회의 임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경우(예: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및 편집위원에만 인정하며, 비상임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활동

- 위원회활동은 상위 최대 3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위촉장 및 위촉서류에 근거하여 배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강연

- 외부강연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등에서의 강연을 의미한다.
※ 산업체 강연은 산학협력영역에 포함한다.
-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를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심 판

- 심판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공인경기 심판만 인정된다.

각종 평가 활동

- 국가고시의 경우 국가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 기술사, 회계사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시험 등)가 주관하는 시험에 한한다.
- 채점 및 출제 위원을 겸할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한다.
- 연구비지원신청서 심사, 학술지 논문 심사 등도 인정한다.

대외협력

- 대외협력 체결 및 산업체 현장 실습(협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기부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학생복지봉사팀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기 타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산학협력영역(10점) ※ 1%당 0.1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교육	취업지도	취업실적(정규직)	5	10점 1%당 0.1점
		취업연계 : 건당 10%		
	교수 현장학기제 (산업체파견활동)	주당 1%		
	학생실습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수상 건당 5%		
		현장실습지도 건당 5%		
		실습협약 체결 건당 5% 실습 파견 1건(기업) 당 10%		
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20%			
봉사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치 및 관리 건당 10%	5	10점 1%당 0.1점
	기술, 경영지도	건당 5%		
	장학금 유치	산업체 장학금 유치 20만원 당 1%		
	산업체 교류	방문 특강 건당 2%		
		기타 산업체 지원 활동 건당 2%점		
연구	특허	국제특허 : 50%		
		국내특허 : 30%		
	연구비 수탁 (산업체 연구비 수탁)	인문사회 25만원당 : 1%		
		자연계 50만원당 : 1%		

【 산학협력 】

취업실적(정규직)<학과단위 평가>(5점)

- 각 학과의 배점은 취업실적 기준(교과부 보고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취업률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전공이나 학과가 상이한 경우, 직접 취업시킨 교수에게 학생 1인당 0.1점을 추가 부여하며, 추천서 등 입증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자 미 배출학과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취업실적 미반영한 자신의 교육총점)

취업연계(개인평가)

- 교수가 노력하여 학생 취업추천으로 취업을 지원한 개인실적
-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교과부 취업률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관련담당자 확인서 제출

교수현장학기제(단기연수 제외)

- 대학 교원인사팀에서 승인을 득한 연수에 한해 인정한다.

학생실습(4주이상 / 1일 8H기준)

- 학사관리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지도에 대한 요약문 제출
- 전공에 관련된 현장실습 지도가 있을시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교내·외 수상은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시 점수 부여
 - ※ 캡스톤 디자인 :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활동
- 실습협약체결 및 실습과견(신규기업)은 증빙자료(기간, 장소, 담당자명 기재)를 제출한 것만 인정

창업동아리 지도

- 학생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기술, 경영지도

- 회사 방문일자, 지도내용 등의 확인서 제출
- 자문의 경우 자문료 증빙서 제출

장학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관련부서 자료를 근거로 함

산업체 교류

- 방문특강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산업체에서의 강연을 의미하며(직무교육 포함),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은 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한다.

특허

- 특허는 등록증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정비율은 1/n으로 한다.

연구비 수탁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만 해당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별표 2>

교원업적평가서(연구형)

학(부)과 직명 : 성명 : _____

I 교 육 (40)				II 연 구 (4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1-1	강의평가	수강생 평가		II-1	논문	()%	
1-2	강의공개	()건					
1-3	보충지도	()건		II-2	저서	()%	
1-4	티칭포트폴리오	()건					
1-5	중간고사 피드백	()건		II-3	전시	최대 2회 인정	()%
1-6	수시시험 피드백	()건					
1-7	수업개선노력	세미나	()건	II-4	수상공훈	최대 1회 인정	()%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	()건				
1-8				II-5	학술활동	최대 50% 인정	()%
1-9	학생지도	학생상담 (상담/전체)					
1-10	(7)	학생정원관리	()%	II-6	연구비 수탁	()%	
교육영역 계				연구영역 계			
III 봉 사 (10)				IV 산학협력 (1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교내 봉사 (5)	III-1	행정보직 활동	()%	IV-1	취업지 도	취업실적(취업률)(5)	()%
		위원회 활동	()%			취업연계	()건
	III-2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IV-2	교수현장학기제 (산업체 파견활동)		()주
	III-3	입시관련 홍보활동	()건				
	III-4	비정규수업 참여	()시간	IV-3	학생실 습	캡스톤디자인 및 수상	()건
	III-5	대학 정책사업 참여	()건			현장실습지도	()건
III-6	기타 교내봉사	()%	실습협약체결			()건	
					실습파견	()건	
교외 봉사 (5)	III-7	교내·외 수상실적	()%	IV-4	창업동아리지도		()건
	III-8	학회활동	()%	IV-5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건
	III-9	위원회활동	()%	IV-6	기술, 경영지도		()건
	III-10	초청강연	()건	IV-7	장학금 유치		()만원
	III-11	심판	()건	IV-8	산업체 교류	방문특강	()건
	III-12	각종 평가활동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	()건
	III-13	기부금 유치	()만원	IV-9	특허	국제특허	()건
	III-14	기타	()건			국내특허	()건
			IV-10	연구비 수주		()만원	
봉사영역 계				산학협력영역 계			
총계(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점			

연구유형 지침서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연구형	40	40	10	10

1. 교육영역(40점) (개정 2016.2.4., 2019.01.28.)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기본형 (40점)	평가 (20)	수업평가		20
	강의 (13)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강의공개		2
		보충지도		2
		티칭포트폴리오		3
		중간고사 피드백		2
		수시시험 피드백		2
		수업개선노력	세미나	1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	1
		학생 지도 (7)	학생상담	
	학생정원관리		5	

【 교 육 】

수업평가 (20점)

- 1학기, 2학기 평균점수를 20점으로 환산

AL(Active Learning) 교과목 수업운영

구 분	점 수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 공개수업(2점) : 교과목당 1점 (최대 2개 교과목 인정)
- 수업참관(1점) : 회당 0.5점 (최대 2회 인정)

보충 지도(2점)

-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재시험 실시 후 근거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당 1점

티칭포트폴리오(3점)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된 포트폴리오(예: e-portfolio) 제출시 건당 1점 반영

중간고사 피드백(2점)

-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 한 경우 과목 당 0.5점
근거서류 : 인트라넷 성적입력여부, 모범답안

수시시험 피드백(실기시험 포함)(2점)

- 정규시험 외의 시험 평가 후 근거서류 제출 시 건당 0.5점
- 출석부에 표기, 시험원안지 등 제출
- 중간 및 기말고사 외의 시험 전부 인정

수업개선 노력(2점)

-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며, 건당 0.5점 인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가(교수법 특강, 강의중간 자가평가 등)
- 기타 교육 관련 세미나 참여 및 교육도구 개발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 세미나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교육도구 개발의 경우, 근거자료 제출시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

학생상담(2점)

- 상담실적은 학기단위로 평가하며 한 학기당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도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교수(예 : 교양학부 교수)는 지도 학생 외(다른 교수의 지도 학생, 또는 타 학과 학생)의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근거에 따라 지도학생 1회 상담별 0.1점을 부가한다.

$$\text{취득 점수} = \frac{\text{상담한 학생수}}{\text{평생 family제 지도학생 수}(n)} \times 1(\text{학기})$$

학생정원관리<학과단위 평가>(5점)

- 학생정원은 10월 1일을 기준일로 평가한다.
- 각 학(부)과의 배점은 각 전공의 재적생 비율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편제정원 대비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교양학부 등 재학생이 없는 학과(폐과 제외)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학생정원관리 미반영 자신 교육총점)

2. 연구영역(40점) ※ 1%당 0.1점

인정 범위	항목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내용	배점	내용	배점
상한제 없음	논문	Science, Nature, Cell	500%	Science, Nature, Cell	500%
		SCI, SSCI, SCIE, A&HCL	300%	SCI, SSCI, SCIE, A&HCL	300%
		국외전문학술지, SCOPUS	120%	Index medicus, SCOPUS	200%
		학진등재지	120%	학진등재지	120%
		학진등재후보지	100%	학진등재후보지	100%
		국외일반학술지	100%	-	-
	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150%	국외전문학술저서	150%
		국내전문학술저서	100%	국내전문학술저서	100%
최대1회 인정	수상 공훈	국제학술상	50%	국제학술상	50%
		국내학술상	30%	국내학술상	30%
		교내학술상	20%	교내학술상	20%
최대50% 인정	학술 활동	국제학회 발표	20%	국제학회 발표	20%
		국내학회 발표	10%	국내학회 발표	10%
	연구비 수탁	인문사회 25만원당 (산업체 연구비 제외)	1%	자연계 50만원당 (산업체 연구비 제외)	1%

【 연구 】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란 SCI, A&HCI, SSCI, SCIE 등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전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해당 국가 학술지 목록에 근거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일반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술지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은 논문을 게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단,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하여 공동연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단독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를 말한다.

저서

- 국내·외 전문학술저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저서 인정 비율은 $1/n$ 로 하며 n 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수상

- 국제학술상, 국내학술상, 교내학술상을 인정하며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학술활동

- 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여기에는 구연발표만 해당한다.

연구비 수탁

- 교내학술연구비, 해외파견,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는 제외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 봉 사 】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 대학평의원 및 교무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본다.
- 행정보직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본 대학교 규정집에 있는 위원회 또는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T/F팀 포함)를 말하며, 평가는 참석횟수(15회 이상 참석시 만점)로 한다.
- 행정보직 수행기간 및 위원회 활동은 위촉받은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산출한다.
(예) 위촉기간 (2010. 3 - 2011. 2) : 2010년 실적
위촉기간 (2010. 8 - 2012. 7) : 2011년, 2012년 적용
- 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은 100%인정, 6개월 미만은 50%를 인정한다.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됨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내용을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 언론 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홍보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입시관련 홍보 활동

- 입시관련 홍보활동은 입학관리팀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규수업 참여

-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하여 주 15시간 당 30%
- 평생교육대학, 경영행정대학원 등의 특별교육 과정은 이에 해당한다.

대학 정책 사업 참여

- 대학 정책 사업 참여는 사업획득후 수행하는 경우로 교수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인정범위는 1건당 책임자(30%), 참가자(10%)로 한다.
-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개인 선택

기타 교내봉사

- 각종 노력봉사 1건당 5%로 하며,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내외 수상실적

-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연구관련 수상은 연구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활동

- 학회활동은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을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학회의 임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경우(예: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및 편집위원에만 인정하며, 비상임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활동

- 위원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위촉장 및 위촉서류에 근거하여 배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강연

- 외부강연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등에서의 강연을 의미한다.
 - * 산업체 강연은 산학협력영역에 포함된다.
-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를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심 판

- 심판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공인경기 심판만 인정된다

각종 평가 활동

- 국가고시의 경우 국가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 기술사, 회계사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시험 등)가 주관하는 시험에 한한다.
- 채점 및 출제 위원을 겸할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한다.
- 연구비지원신청서 심사, 학술지 논문 심사 등도 인정한다.

대외협력

- 대외협력 체결 및 산업체 현장 실습(협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기부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학생복지봉사팀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기 타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산학협력영역(10점) ※ 1%당 0.1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교육	취업지도	취업실적(정규직)	5	10점 1%당 0.1점
		취업연계 : 건당 10%		
	교수 현장학기제 (산업체파견활동)	주당 1%		
	학생실습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수상 건당 5%		
		현장실습지도 건당 5%		
		실습협약 체결 건당 5%		
실습 파견 1건(기업) 당 10%				
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20%			
봉사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치 및 관리 건당 10%	5	10점 1%당 0.1점
	기술, 경영지도	건당 5%		
	장학금 유치	산업체 장학금 유치 20만원 당 1%		
	산업체 교류	방문 특강 건당 2%		
		기타 산업체 지원 활동 건당 2%점		
연구	특허	국제특허 : 50%	5	10점 1%당 0.1점
		국내특허 : 30%		
	연구비 수주 (산업체 연구비 수주)	인문사회 25만원당 : 1%		
		자연계 50만원당 : 1%		

【 산학협력 】

취업실적(정규직)<학과단위 평가>(5점)

- 각 학과의 배점은 취업실적 기준(교과부 보고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취업률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전공이나 학과가 상이한 경우, 직접 취업시킨 교수에게 학생 1인당 0.1점을 추가 부여하며, 추천서 등 입증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자 미 배출학과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취업실적 미반영한 자신의 교육총점)

취업연계(개인평가)

- 교수가 노력하여 학생 취업추천으로 취업을 지원한 개인실적

-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교과부 취업률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관련담당자 확인서 제출

현장학기제(단기연수 제외)

- 대학 교원인사팀에서 승인을 득한 연수에 한해 인정한다.

학생실습(4주이상 / 1일 8H기준)

- 학사관리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지도에 대한 요약문 제출
- 전공에 관련된 현장실습 지도가 있을시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교내·외 수상은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시 점수 부여
 - ※ 캡스톤 디자인 :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활동
- 실습협약체결 및 실습과견(신규기업)은 증빙자료(기간, 장소, 담당자명 기재)를 제출한 것만 인정

창업동아리 지도

- 학생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기술, 경영지도

- 회사 방문일자, 지도내용 등의 확인서 제출
- 자문의 경우 자문료 증빙서 제출

장학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관련부서 자료를 근거로 함

산업체 교류

- 방문특강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산업체에서의 강연을 의미하며(직무교육 포함),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은 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한다.

특허

- 특허는 등록증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정비율은 1/n으로 한다.

연구비 수탁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만 해당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별표 3>

교원업적평가서(봉사형)

학(부)과 _____ 직명 : _____ 성명 : _____

I 교육 (40)				II 연구 (2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1-1	강의평가	수강생 평가		II-1	논문	()%	
1-2	강의공개	()건		II-2	저서	()%	
1-3	보충지도	()건			전시 및 발표	()%	
1-4	티칭포트폴리오	()건		II-4	창작	()%	
1-5	중간고사 피드백	()건			공연 및 의상	()%	
1-6	수시시험 피드백	()건		II-6	학술활동	()%	
1-7	수업개선노력	세미나	()건		II-7	연구비 수탁	()만원
1-8		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건	II-8		수상공훈	()%
1-9	학생지도 (7)	학생상담	(상담/전체)				
1-10		학생정원관리	()%				
교육영역 계				연구영역 계			
III 봉사 (30)				IV 산학협력 (1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교내 봉사	III-1	행정보직 활동	()%	IV-1	취업지도	취업실적(취업률)(5)	()%
		위원회 활동	()%			취업연계	()건
	III-2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IV-2	교수현장학기제 (산업체 파견활동)		()주
	III-3	입시관련 홍보활동	()건				
	III-4	비정규수업 참여	()시간	IV-3	학생실습	캡스톤디자인 및 수상	()건
	III-5	대학 정책사업 참여	()건			현장실습지도	()건
	III-6	기타 교내봉사	()%			실습협약체결	()건
III-7	교내·외 수상실적	()%	IV-4	창업동아리지도	()건		
교외 봉사	III-8	학회활동	()%	IV-5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건	
	III-9	위원회활동	()%	IV-6	기술, 경영지도	()건	
	III-10	초청강연	()건	IV-7	장학금 유치	()만원	
	III-11	심판	()건	IV-8	산업체 교류	방문특강	()건
	III-12	각종 평가활동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	()건
	III-13	기부금 유치	()만원	IV-9	특허	국제특허	()건
						국내특허	()건
	III-14	기타	()건	IV-10	연구비 수주	()만원	
봉사영역 계				산학협력영역 계			
총계(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점			

봉사유형 지침서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봉사형	40	20	30	10

1. 교육영역(40점) <개정 2016.2.4.>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기본형 (40점)	평가 (20)	수업평가		20
	강의 (13)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강의공개		2
		보충지도		2
		티칭포트폴리오		3
		중간고사 피드백		2
		수시시험 피드백		2
		수업개선노력	세미나	1
			교수학습센터프로그램	1
	학생 지도 (7)	학생상담		2
학생정원관리		5		

【 교 육 】

수업평가 (20점)

- 1학기, 2학기 평균점수를 20점으로 환산

AL(Active Learning) 교과목 수업운영

구 분	점 수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 공개수업(2점) : 교과목당 1점 (최대 2개 교과목 인정)
- 수업참관(1점) : 회당 0.5점 (최대 2회 인정)

강의공개(2점)

-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강의공개 인정
- ACE사업 기간 동안에는 시행실적 소급적용
- ※ '10, '11학년도 시행실적은 '12년도 업적평가에 반영

- ACE사업 종료 이후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추천이 아니라 개인이 지원하고 선발된 경우 인정한다.
- 강의공개는 1건당 2점으로 함 단,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 1주당 0.2점

보충 지도(2점)

-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재시험 실시 후 근거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당 1점

티칭포트폴리오(3점)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된 포트폴리오(예: e-portfolio) 제출시 건당 1점 반영

중간고사 피드백(2점)

-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 한 경우 과목 당 0.5점
근거서류 : 인트라넷 성적입력여부, 모범답안

수시시험 피드백(실기시험 포함)(2점)

- 정규시험 외의 시험 평가 후 근거서류 제출 시 건당 0.5점
- 출석부에 표기, 시험원안지 등 제출
- 중간 및 기말고사 외의 시험 전부 인정

수업개선 노력(2점)

-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며, 건당 0.5점 인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가(교수법 특강, 강의중간 자가평가 등)
- 기타 교육 관련 세미나 참여 및 교육도구 개발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 세미나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교육도구 개발의 경우, 근거자료 제출시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

학생상담(2점)

- 상담실적은 학기단위로 평가하며 한 학기당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도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교수(예 : 교양학부 교수)는 지도 학생 외(다른 교수의 지도 학생, 또는 타 학과 학생)의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근거에 따라 지도학생 1회 상담별 0.1점을 부가한다.

$$\text{취득 점수} = \frac{\text{상담한 학생수}}{\text{평생 family제 지도학생 수}(n)} \times 1(\text{학기})$$

학생정원관리<학과단위 평가>(5점)

- 학생정원은 10월 1일을 기준일로 평가한다.
- 각 학(부)과의 배점은 각 전공의 재적생 비율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편제정원 대비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교양학부 등 재학생이 없는 학과(폐과 제외)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학생정원관리 미반영 자신 교육총점)

2. 연구영역(20점) ※ 1%당 0.1점

구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구분	배점	구분	배점	
논문	Science, Nature, Cell		Science, Nature, Cell		
	500%		500%		
	SCI, SSCI, SCIE, A&HCL		SCI, SSCI, SCIE, A&HCL		
	300%		300%		
	국외전문학술지, SCOPUS		Index medicus, SCOPUS		
	250%		250%		
	국외일반학술지		국외일반학술지		
	150%		150%		
논문	학진등재지		학진등재지		
	200%		200%		
	학진등재후보지		학진등재후보지		
	150%		150%		
	일반학술지		일반학술지		
	100%		100%		
	기타학술논문		기타학술논문		
	50%		50%		
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250%		250%		
	국내전문학술저서		국내전문학술저서		
	200%		200%		
	번역	전문번역	200%	번역	전문번역
일반번역		100%	일반번역		100%
기타 저서		100%	기타 저서		100%
전시 및 발표	전국 전시개인전		전국 전시개인전		
	200%		200%		
	일반 개인전		일반 개인전		
	150%		150%		
	국제 초대작가전		국제 초대작가전		
	160%		16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내)		50%	공인 단체(국내)		50%
창작	장편소설, 희곡, 시나리오		-		
	100%				
중단편, 시, 수필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		80%			
공연 및 의상	연출, 희곡, 시나리오		100%		
	80%		감독, 무대디자인		80%
학술 활동	국제학회 발표		국제학회 발표		
	50%		50%		
국내학회 발표		30%	국내학회 발표		30%
연구비 수탁	인문사회 25만원당 1%		자연계 50만원당 1%		
수상 공훈	국제학술상		국제학술상		
	100%		100%		
	국내학술상		국내학술상		
50%		50%			
교내학술상		30%	교내학술상		30%

【 연 구 】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란 SCI, A&HCI, SSCI, SCIE 등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전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해당 국가 학술지 목록에 근거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일반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술지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은 논문을 게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 학술논문이란 일반학술지 이외의 학술지, 교내논문집 등을 말하며, 인정범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하여 공동연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단독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를 말한다.

저서

- 국내·외 전문학술저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전문번역은 전공관련 학술번역, 일반번역은 교양서 등 기타분야 번역을 말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타저서는 편저, 교재, 교양학술서 등을 말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개정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저서 인정 비율은 $1/n$ 로 하며 n 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전시 및 발표

-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및 이에 준하는 미술관을 말한다.
- 일반 공인된 전시관은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을 제외한 미술관으로 지자체 운영 미술관 및 전시관 또는 이에 준하는 미술관 및 전시관을 말한다.
- 개인전과 초대작가전으로 2회까지만 인정한다.
- 국제전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 공인된 단체전(국제, 국내), 공인된 초대작가전(국제 및 국내), 공인된 공모전은 사단법인,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 (등재 후보 학회 포함), 5회 이상에 작품 전시회 실적이 있는 협회나 학회를 말한다.
- 전시 및 발표 증빙자료로 팜플릿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 및 발표는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중복되는 작품전시 및 발표는 1회만 인정한다.

창작

-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으로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장막희곡, 장편시나리오, 중단편소설, 시, 단막희곡, 평론, 수필, 단편시나리오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잡지로 선정된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만 인정한다.
- 장막희곡과 장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중단편소설,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25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장편시나리오, 단편시나리오, 장막희곡, 단막희곡은 공연 및 영상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시는 2편까지 인정한다.
- 인정 비율은 1/n로 한다.

공연 및 영상

-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공연장에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또는 민족예술단체연합회 산하 공공협회에 가입된 단체에서 공연한 작품만 인정한다.
- 영상은 국내외에서 상영된 영상물만 인정하며, 시나리오, 희곡은 창작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

- 특허, 실용신안, 기술평가, 프로그램 등록은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술평가로 인정한다.
- 인정비율은 1/n으로 한다.

학술활동

- 학술회의발표와 연구비 수탁은 총 100%까지만 인정한다.
- 학술회의 발표 및 강연은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국제학회란 국제적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로 3개국 이상의 외국인 논문발표자가 참가한 경우를 말한다.
- 국내학회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 주최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전문 학술회의를 말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연구참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1/10$)

연구비 수탁

- 교내학술연구비, 해외파견,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는 제외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수상 및 공훈

- 국제학술상, 국내학술상, 교내학술상을 인정하며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봉 사 】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 대학평의원 및 교무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본다.
- 행정보직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본 대학교 규정집에 있는 위원회 또는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T/F팀 포함)를 말하며, 평가는 참석횟수(15회 이상 참석시 만점)로 한다.
- 행정보직 수행기간 및 위원회 활동은 위촉받은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산출한다.
(예) 위촉기간 (2010. 3 - 2011. 2) : 2010년 실적
위촉기간 (2010. 8 - 2012. 7) : 2011년, 2012년 적용
- 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은 100%인정, 6개월 미만은 50%를 인정한다.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됨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내용을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 언론 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홍보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입시관련 홍보 활동

- 입시관련 홍보활동은 입학관리팀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규수업 참여

-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하여 주 15시간 당 30%
- 평생교육대학, 경영행정대학원 등의 특별교육 과정은 이에 해당한다.

대학 정책 사업 참여

- 대학 정책 사업 참여는 사업획득후 수행하는 경우로 교수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인정범위는 1건당 책임자(30%), 참가자(10%)로 한다.
-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개인 선택

기타 교내봉사

- 각종 노력봉사 1건당 5%로 하며,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내외 수상실적

-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연구관련 수상은 연구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활동

- 학회활동은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을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학회의 임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경우(예: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및 편집위원에만 인정하며, 비상임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활동

- 위원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위촉장 및 위촉서류에 근거하여 배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강연

- 외부강연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등에서의 강연을 의미하며, 산적체 강연은 제외한다.
-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를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심 판

- 심판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공인경기 심판만 인정된다

각종 평가 활동

- 국가고시의 경우 국가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 기술사, 회계사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시험 등)가 주관하는 시험에 한한다.
- 채점 및 출제 위원을 겸할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한다.
- 연구비지원신청서 심사, 학술지 논문 심사 등도 인정한다.

대외협력

- 대외협력 체결 및 산업체 현장 실습(협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기부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학생복지봉사팀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기 타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산학협력영역(10점) ※ 1%당 0.1점

구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교육	취업지도	취업실적(정규직)	5	10점 1%당 0.1점
		취업연계 : 건당 10%		
	교수 현장학기제 (산업체파견활동)	주당 1%		
	학생실습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수상 건당 5%		
		현장실습지도 건당 5%		
		실습협약 체결 건당 5%		
실습 파견 1건(기업) 당 10%				
창업동아리 지도	건당 20%			
봉사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유치 및 관리 건당 10%	5	10점 1%당 0.1점
	기술, 경영지도	건당 5%		
	장학금 유치	산업체 장학금 유치 20만원 당 1%		
	산업체 교류	방문 특강 건당 2%		
		기타 산업체 지원 활동 건당 2%점		
연구	특허	국제특허 : 50%	5	10점 1%당 0.1점
		국내특허 : 30%		
	연구비 수주 (산업체 연구비 수주)	인문사회 25만원당 : 1%		
		자연계 50만원당 : 1%		

【 산학협력 】

취업실적(정규직)<학과단위 평가>(5점)

- 각 학과의 배점은 취업실적 기준(교과부 보고용)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취업률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전공이나 학과가 상이한 경우, 직접 취업시킨 교수에게 학생 1인당 0.1점을 추가 부여하며, 추천서 등 입증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취업자 미 배출학과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x : 취업실적 미반영한 자신의 교육총점)

취업연계(개인평가)

- 교수가 노력하여 학생 취업추천으로 취업을 지원한 개인실적
-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교과부 취업률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관련담당자 확인서 제출

현장학기제(단기연수 제외)

- 대학 교원인사팀에서 승인을 득한 연수에 해 인정한다.

학생실습(4주이상 / 1일 8H기준)

- 학사관리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지도에 대한 요약문 제출
- 전공에 관련된 현장실습 지도가 있을시 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자에 한함
- 캡스톤 디자인 지도 및 교내·외 수상은 두 가지 조건 동시 충족 시 점수 부여
 - ※ 캡스톤 디자인 :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활동
- 실습협약체결 및 실습과건(신규기업)은 증빙자료(기간, 장소, 담당자명 기재)를 제출한 것만 인정

창업동아리 지도

- 학생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 산학협력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및 관련부서에서 인정한 서류 제출

기술, 경영지도

- 회사 방문일자, 지도내용 등의 확인서 제출
- 자문의 경우 자문료 증빙서 제출

장학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관련부서 자료를 근거로 함

산업체 교류

- 방문특강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산업체에서의 강연을 의미하며(직무교육 포함),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은 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한다.

특허

- 특허는 등록증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인정비율은 1/n으로 한다.

연구비 수주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만 해당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별표 4>

교원업적평가서(산학협력형)

학(부)과 직명 : _____ 성명 : _____

I 교 육 (30)				II 연 구 (1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1-1	강의평가	수강생 평가		II-1	논문	()%		
1-2	강의공개	()건		II-2	저서	()%		
1-3	티칭포트폴리오	()건		II-3	전시 및 발표	()%		
1-4	중간고사 피드백	()건		II-4	창작	()%		
1-5	수시시험 피드백	()건		II-5	공연 및 의상	()%		
1-6	학생지도 (7)	학생상담	(상담/전체)	II-6	학술활동	()%		
1-7		학생정원관리	()%	II-7	연구비 수탁	()%		
				II-8	수상공훈	()%		
교육영역 계				연구영역 계				
III 봉 사 (10)				IV 산학협력 (50)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평 가 지 표		실 적	점 수	
교내 봉사 (5)	III-1	행정보직 활동	()%	IV-1	산학협력 관련사업 유치			
	III-2	위원회 활동	()%		IV-2	산학협력 관련 사업 기획 참여		
	III-3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	IV-3		산업체 기술지도	기술이전	
	III-4	임시관련 홍보활동	()건		기술자문			
	III-5	비정규수업 참여	()시간		IV-4	현장실습지도		
	III-6	대학 정책사업 참여	()건	IV-6	교원창업			
	III-7	기타 교내봉사	()%	IV-8	산학협력(가족기업) 기업유치 및 관리			
교외 봉사 (5)	III-8	교내·외 수상실적	()%		IV-9	창업동아리지도		
	III-9	학회활동	()%		IV-10	산학연계 인력양성		
	III-10	위원회활동	()%		IV-11	산학협력 공동연구		
	III-11	초청강연	()건		IV-12	특허		
	III-12	심판	()건		IV-13	산학연계 재정기여		
	III-13	각종 평가활동	()%		IV-14	논문(100%인정)		
	III-14	기부금 유치	()만원					
	III-15	기타	()건					
봉사영역 계				산학협력영역 계				
총계(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				점				

산학협력유형 지침서

구 분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산학협력형	30	10	10	50

1. 교육영역(30점) (개정 2016.2.4., 2019.01.28.)

구 분		평가지표		배점
기본형 (30점)	평가 (20)	수업평가		20
	강의 (5)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보충지도		2
		티칭포트폴리오		2
		수업개선노력		1
	학생 지도 (5)	학생상담		2
		학생정원관리		3

【 교 육 】

수업평가 (20점)

- 1학기, 2학기 평균점수를 20점으로 환산

AL(Active Learning) 교과목 수업운영

구 분	점 수	
AL교과목 수업운영	공개수업	2
	수업참관	1

- 공개수업(2점) : 교과목당 1점 (최대 2개 교과목 인정)
- 수업참관(1점) : 회당 0.5점 (최대 2회 인정)

보충 지도(2점)

-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재시험 실시 후 근거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당 1점

티칭포트폴리오(2점)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인정된 포트폴리오(예: e-portfolio) 제출시 건당 1점 반영

수업개선 노력(1점)

- 수업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며, 건당 0.5점 인정
-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가(교수법 특강, 강의중간 자가평가 등)
- 기타 교육 관련 세미나 참여 및 교육도구 개발 등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 세미나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교육도구 개발의 경우, 근거자료 제출시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

학생상담(2점)

- 상담실적은 학기단위로 평가하며 한 학기당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도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교수(예 : 교양학부 교수)는 지도 학생 외(다른 교수의 지도 학생, 또는 타 학과 학생)의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그 근거에 따라 지도학생 1회 상담별 0.1점을 부가한다.

$$\text{취득 점수} = \frac{\text{상담한 학생수}}{\text{평생 family제 지도학생 수}(n)} \times 1(\text{학기})$$

학생정원관리<학과단위 평가>(3점)

- 학생정원은 10월 1일을 기준일로 평가한다.
- 각 학(부)과의 배점은 각 전공의 재적생 비율에 의거하여 부여한다.
- 점수 부여 방식은 편제정원 대비 50%를 0.1점으로 하고 1% 상승시 0.1점을 가산한다.
- 교양학부 등 재학생이 없는 학과(폐과 제외)는 환산점수로 반영한다.
(선택유형 교육총점 : (선택유형 교육총점-5점) = \underline{x} : 학생정원관리 미반영 자신 교육총점)

2. 봉사영역(10점) ※ 1%당 0.1점 <개정 2016.2.4., 2019.01.28.>

구분	세 부 구 분	배 점 기 준
교내 봉사 (5)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보직 책임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H이하 : 200% - 8H이하 : 100% · 기타 행정보직 : 50% <p style="text-align: right;">상위 1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위원 : 20% <p style="text-align: right;">상위 최대 3개 인정</p>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최고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방송 출연 : 30% · 중앙지 보도 및 컬럼게재 : 20% · 지방지 보도 및 컬럼게재 : 10% · 기타 보도 및 컬럼게재 : 5% <p style="text-align: right;">지방방송 출연 : 20%</p>
	입시관련홍보활동 (최고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방문 및 입시홍보활동 건당 5%
	비정규수업 참여 (최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간당 30%
	대학 정책사업 참여 (최고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주요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참여자(30%), 참가자(10%) (예: RIS, 학교기업 활동 등)
	기타 교내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노력봉사 건당 5%
교외 봉사 (5)	수상실적 (최고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장 표창 : 30% · 국제학술단체상 및 중앙정부기관 이상 : 50% · 지방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30% · 국내학술 및 민간단체상 수상 : 10%
	학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국학회 회장: 50% · 부회장, 편집위원장 : 30% (등재 및 후보학회, 구체적 역할이 주어진 경우)
	위원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 20% · 각종 민간단체 및 산업체 위원 : 10%
	초청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연 건당 5%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경기 심판 : 30%
	각종 평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고시 출제 : 건당 30% · 국가고시 채점 : 건당 10% · 연구과제 및 학술지 논문심사 : 건당 10%
	기부금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단체 등 10만원 당 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 건당 5%

【 봉 사 】

행정보직 및 위원회 활동

- 대학평의원 및 교무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본다.
- 행정보직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본 대학교 규정집에 있는 위원회 또는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T/F팀 포함)를 말하며, 평가는 참석횟수(15회 이상 참석시 만점)로 한다.
- 행정보직 수행기간 및 위원회 활동은 위촉받은 당해연도의 실적으로 산출한다.
(예) 위촉기간 (2010. 3 - 2011. 2) : 2010년 실적
위촉기간 (2010. 8 - 2012. 7) : 2011년, 2012년 적용
- 임기 기간이 6개월 이상은 100%인정, 6개월 미만은 50%를 인정한다.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됨

-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동일내용을 동시에 여러 언론 매체에 기고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위점수만을 인정한다.
- 언론 매체 기고 및 출연 실적은 홍보팀의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입시관련 홍보 활동

- 입시관련 홍보활동은 입학관리팀 자료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적인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규수업 참여

-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하여 주 15시간 당 30%
- 평생교육대학, 경영행정대학원 등의 특별교육 과정은 이에 해당한다.

대학 정책 사업 참여

- 대학 정책 사업 참여는 사업획득후 수행하는 경우로 교수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인정범위는 1건당 책임자(30%), 참가자(10%)로 한다.
-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개인 선택

기타 교내봉사

- 각종 노력봉사 1건당 5%로 하며,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교내외 수상실적

- 교수 수상 실적은 합산이 가능하며 교수 본인의 수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연구관련 수상은 연구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활동

- 학회활동은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을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학회활동은 학술지 또는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 학회의 임원은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진 경우(예: 총무이사, 학술이사 등) 및 편집위원에만 인정하며, 비상임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활동

- 위원회활동은 각 항목 내에서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상위 1개 항목만 인정한다.
- 위원회활동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 위원회 활동은 위촉장 및 위촉서류에 근거하여 배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청강연

- 외부강연 실적은 국가 및 지방단체, 민간 협의회 등에서의 강연을 의미하며, 산적체 강연은 제외한다.
- 근거서류(공문서 또는 인쇄물)를 제출하여야만 인정한다.

심 판

- 심판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공인경기 심판만 인정된다

각종 평가 활동

- 국가고시의 경우 국가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등, 기술사, 회계사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시험 등)가 주관하는 시험에 한한다.
- 채점 및 출제 위원을 겸할 경우 상위점수만 인정한다.
- 연구비지원신청서 심사, 학술지 논문 심사 등도 인정한다.

대외협력

- 대외협력 체결 및 산업체 현장 실습(협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기부금 유치

- 자선단체 또는 장학금을 유치한 내역이 해당되며 증빙은 학생복지봉사팀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

기 타

- 기타 각종 교외봉사 활동을 의미하며,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구영역(10점) ※ 1%당 0.1점

구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구분	배점	구분	배점						
논문	Science, Nature, Cell		Science, Nature, Cell							
	500%		500%							
	SCI, SSCI, SCIE, A&HCL		SCI, SSCI, SCIE, A&HCL							
	300%		300%							
	국외전문학술지, SCOPUS		Index medicus, SCOPUS							
	250%		250%							
	국외일반학술지		국외일반학술지							
	150%		150%							
논문	학진등재지		학진등재지							
	200%		200%							
	학진등재후보지		학진등재후보지							
	150%		150%							
	일반학술지		일반학술지							
	100%		100%							
	기타학술논문		기타학술논문							
	50%		50%							
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국외전문학술저서							
	250%		250%							
	국내전문학술저서		국내전문학술저서							
	200%		200%							
	번역	전문번역	200%	번역	전문번역	200%				
일반번역		100%	일반번역		100%					
기타 저서		100%		기타 저서		100%				
전시 및 발표	전국 전시개인전		200%		전국 전시개인전		200%			
	일반 개인전		150%		일반 개인전		150%			
	국제 초대작가전		160%		국제 초대작가전		16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국내 초대작가전		10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제)		80%			
	공인 단체(국내)		50%		공인 단체(국내)		50%			
창작	장편소설, 희곡, 시나리오		100%							
	중단편, 시, 수필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		80%							
공연 및 의상	연출, 희곡, 시나리오		100%							
	감독, 무대의상		80%						감독, 무대디자인	
학술 활동	국제학회 발표		50%		국제학회 발표				50%	
	국내학회 발표		30%		국내학회 발표				30%	
연구비 수탁	인문사회 25만원당 1%			자연계 50만원당 1%						
수상 공훈	국제학술상		100%		국제학술상				100%	
	국내학술상		50%		국내학술상				50%	
	교내학술상		30%		교내학술상				30%	

【 연 구 】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란 SCI, A&HCI, SSCI, SCIE 등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전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해당 국가 학술지 목록에 근거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일반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학술지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은 논문을 게재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기타 학술논문이란 일반학술지 이외의 학술지, 교내논문집 등을 말하며, 인정범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하여 공동연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 연구책임자는 단독연구, 주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를 말한다.

저서

- 국내·외 전문학술저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을 인정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전문번역은 전공관련 학술번역, 일반번역은 교양서 등 기타분야 번역을 말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타저서는 편저, 교재, 교양학술서 등을 말하며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개정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저서 인정 비율은 $1/n$ 로 하며 n 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을 미인정한다.

전시 및 발표

-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및 이에 준하는 미술관을 말한다.
- 일반 공인된 전시관은 전국규모 이상의 공인된 전시관을 제외한 미술관으로 지자체 운영 미술관 및 전시관 또는 이에 준하는 미술관 및 전시관을 말한다.
- 개인전과 초대작가전으로 2회까지만 인정한다.
- 국제전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 공인된 단체전(국제, 국내), 공인된 초대작가전(국제 및 국내), 공인된 공모전은 사단법인,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회 (등재 후보 학회 포함), 5회 이상에 작품 전시회 실적이 있는 협회나 학회를 말한다.

- 전시 및 발표 증빙자료로 팜플릿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 및 발표는 자신의 전공에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중복되는 작품전시 및 발표는 1회만 인정한다.

창작

-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으로 ISBN 등록도서로서 발간된 것에 한한다.
- 장막희곡, 장편시나리오, 중단편소설, 시, 단막희곡, 평론, 수필, 단편시나리오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잡지로 선정된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만 인정한다.
- 장막희곡과 장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1,00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중단편소설, 단막희곡, 단편시나리오는 200자 원고지 분량 250매 이상의 분량을 말한다.
- 장편시나리오, 단편시나리오, 장막희곡, 단막희곡은 공연 및 영상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시는 2편까지 인정한다.
- 인정 비율은 1/n로 한다.

공연 및 영상

- 협회가 인정하는 전문공연장에서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또는 민족예술단체연합회 산하 공공협회에 가입된 단체에서 공연한 작품만 인정한다.
- 영상은 국내외에서 상영된 영상물만 인정하며, 시나리오, 희곡은 창작의 작품과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

- 특허, 실용신안, 기술평가, 프로그램 등록은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술평가로 인정한다.
- 인정비율은 1/n으로 한다.

학술활동

- 학술회의발표와 연구비 수탁은 총 100%까지만 인정한다.
- 학술회의 발표 및 강연은 초록집에 수록되거나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국제학회란 국제적 규모와 성격의 학술회의로 3개국 이상의 외국인 논문발표자가 참가한 경우를 말한다.
- 국내학회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 주최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전문 학술회의를 말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 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연구참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1/10$)

연구비 수탁

- 교내학술연구비, 해외파견,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외부적인 연구비 수탁을 의미하며, 산업체에서 수탁한 연구비는 제외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수상 및 공훈

- 국제학술상, 국내학술상, 교내학술상을 인정하며 반영여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4. 산학협력영역(50점)

※ 1%당 0.1점

평가항목	배점	기준		
		참여구분	책임자	참여자
산학협력 관련사업유치 (국책사업,기관유치 포함)	1%당 0.1점	사업규모		
		10억원이상/년	250%	200%
		5억원이상/년	200%	160%
		1억원이상/년	150%	120%
		0.5-1억원/년	100%	80%
산학협력 관련 사업기획 참여 (사업계획입안및작성)	1%당 0.1점	사업규모		
		30억원이상/년	150%	120%
		10억원이상/년	120%	100%
		5억원이상/년	100%	80%
		1억원이상/년	50%	40%
산업체기술지도	1%당 0.1점	기술이전	100만원당 25%	
		기술자문(최대 100%인정)	1회당 10%	
현장실습지도	1%당 0.1점	1명당 4% / 최대 80%		
교원창업		200%/건		
산학협력(가족기업) 기업유치및관리	1%당 0.1점	산학협력(가족기업)기업유치	유치기업수 X 5%(최대100%)	
		산학협력(가족기업)기업관리	관리기업수 X 5%(최대100%)	
창업동아리지도	1%당 0.1점	동아리 1개당 20%		
산학연계 인력양성 취업(50%), 인턴십(30%)		1%당 0.1점	사업규모	
	산업체 계약형 학과 유치		300%	150%
	산업체 위탁학과 유치		200%	100%
	산업체 재교육 과정 유치		100%	50%
산학협력 공동연구 (최대100%인정)	1%당 0.1점	· 인문사회 : 교외 연구비 수주액 : 50만원당 10%		
특허		· 자연계 : 교외 연구비 수주액 : 100만원당 10%		
	산학연계 재정기여	1%당 0.1점	· 국제특허 : 350%	
· 국내특허 : 200%				
산학연계 재정기여	1%당 0.1점	· 실용신안, 기술평가 : 50%		
		· 프로그램등록 : 30%		
		발전기금 및 기부장학금유치	(유치금액/천만원)X100%	
		기자재유치	(출연금액/천만원)X100%	
		산학기금/장학금등 직접출연	(출연금액/천만원)X100%	

【 산학협력 】

1. 산학협력 관련 사업 유치 및 참여

- 건양대학교 또는 건양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주관이 되어 진행한 국책 사업을 의미 하며 개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 및 사업 기획 참여 도중 그만 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산학 협력 관련 사업 기획에 참여하여 사업이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된 경우의 배점만 인정된다.

2. 기술 이전

- 교원 또는 직원이 아이디어 또는 연구 성과물을 외부에 이전함으로써 산학협력단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술이전 수혜액은 계약당시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기술이전 비용이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 연구책임자 :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3. 기술 자문

- 교원이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기업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교수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에 관련된 자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자문 내용이 산학협력단에 연구계약서 또는 보고를 통하여 인지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4. 현장 실습 지도

- 교원이 관련 기업체, 연구기관 등을 방문하여 산업체 인사에게 교원의 경험 또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교육, 지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학생 지도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지도는 증빙자료(협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관련 기자재가 현장에 있지 않거나 교육장소가 현장에서 적절치 아닐 경우 제 3의 장소에서 교육한 경우도 인정 가능하다.

5. 교원 창업

- 창업의 경우는 매출이 3개월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산학협력(가족기업) 기업유치 및 관리

- 기업유치는 대외협력 체결 및 산업체 현장 실습(협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 기업관리는 기술지도, 인턴쉽, 학생현장실습 등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7. 창업 동아리 지도

- 신설된 창업 동아리는 동아리가 신설된 날짜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한하여 인정한다.
- 기존의 창업 동아리는 창업, 경진대회 수상 등 동아리 실적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8. 산학연계 인력 양성

- 협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취업(50%), 인턴십(30%)
 - 취업: 건강보험 가입(정규직), 1년 이상 유지, 다음 연도에 반영
 - 인턴십: 6개월 이상 유지,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반영

9. 산학협력 공동연구

- 연구비수탁은 100%까지만 인정한다.
- 연구보고서는 연구비 중앙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연구비만 포함함. 교내학술연구비, 해외과건, 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예체능계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는 해당분야 공연지원비 등을 포함한다.
- 연구비 수혜액은 계약당시 본인 수주의 연구비 총액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평가에만 해당하며, 적용 연도는 연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책임자의 연구비는 세부책임자에게 입금된 연구비만 점수로 계산한다.

10. 특허

- 국내 또는 해외 특허의 경우 등록증을 제출한 것에 한하며, 출원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평가를 받으면 기술평가로 인정한다.
- 인정 비율은 1/n로 한다.

11. 산학연계 재정 기여

- 학교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반영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기자재 유치의 경우 건양대학교에 양도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폐기자재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12. 논문

- 국제저명학술지(ISI 등재 학술지)란 SCI, A&H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외학술지란 국제저명학술지(ISI 등재 학술지) 및 SCIE,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학술지를 말한다.
- 일반학술지란 본 대학 「연구비지급규정」에서 정의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 가입된 회원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회를 말한다.
- 학술논문 첫 페이지 상단에 기재된 명단은 연구보조원을 불문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 인정 비율은 단독연구인 경우 1,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 공동연구자 : $1/(n+1)$,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 $1/n$ (단, 연구참여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1/10$)
- 연구책임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말한다.
- 논문의 경우에는 산학협력형을 선택한 경우 인정 범위는 최고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근무성적 평가항목 및 가중치

평가기준		점수	산출근거	담당부서	비고							
가점	강의시수 초과	5	초과 1시수 당 0.5점	교무처	2개 학기 기준*0.5							
	대단위 강좌(60명 이상)	3	강좌당×0.5	교무처	2개 학기 기준*0.5							
	주 5일 이상 수업	2	학기당 1점	교무처								
	기관표창	1		기획처								
	총장표창	2		기획처								
	이사장, 장관급 표창	2		기획처								
	국무총리 표창	3		기획처								
	대통령 표창	4		기획처								
	정부 훈장과 포장	5		기획처								
	편입학 및 재입학 기여	1		위원회								
감점	강의계획서 기간내 미제출	-1	1회당	교무처								
	무단결강 및 보강계획서 미제출	-1	1회당	교무처								
	허가를 받지 않은 시험감독 불참	-1	1회당	교무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성적평가	-1	1회당	교무처								
	성적표 기간 내 미제출	-1	1회당	교무처								
	성적정정 제출	-1	1회당	교무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타교 출강	-2	1회당	기획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외 여행	-2	1회당	기획처								
	강의시간 무단 변경	-1	1회당	교무처								
	학사보고회, 졸업식, 입학식, 연수회 등 공식적인 학교 모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1	1회당	교무처 기획처								
	시말서	-2	1건 당	기획처								
	교원으로서 품위와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3	1회당	기획처								
	징계(견책)	-5	1회당	기획처								
	징계(감봉 및 정직)	-10	1회당	기획처								
	자퇴생 관리 소홀	-5	(자퇴생/전체지도학생) *100		위원회							
	<table border="1"> <tr> <td>범위</td> <td>3%미만</td> <td>3 ~ 6%</td> <td>6 ~ 9%</td> <td>9 ~12%</td> <td>12%이상</td> </tr> <tr> <td>점수</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범위	3%미만	3 ~ 6%	6 ~ 9%	9 ~12%	12%이상	점수
범위	3%미만	3 ~ 6%	6 ~ 9%	9 ~12%	12%이상							
점수	-1	-2	-3	-4	-5							
강의시수 미달	-0.5	주당 1시수	기획처									